

# 연맹 제운영 규정 개정(안)

## A01 시행세칙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b>제 5 장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</b>		
	<p><b>제21조(여비)</b> 본연맹의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장여비는 별도로 정한다. <b>(별표-1)</b></p> <p><b>제22조(강사비)</b></p> <p>① 본연맹의 교육 및 행사에 소요되는 강사비는 공식일정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그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<b>(별표-2)</b></p> <p>② 원거리에서 진행되는 교육 및 행사의 경우 여비지급기준에 의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b>제23조 (지도제작비)</b></p> <p>① 지도제작 경비의 수입 및 지출기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.<b>(별표-3)</b></p> <p><b>제24조 (경조사비)</b> 본연맹의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<b>(별표-4)</b></p> <p><b>제25조(기타)</b> 본연맹의 재무규정에 없는 지급사항 발생 시 50만 원 범위에서 회장의 판단으로 집행할 수 있다.</p>	세부사항 추가

<별표-1> 제21조 해당

### 국내여비 지급기준

\*중앙연맹의 여비규정은 2017년4월3일 개정된 대한체육회 여비규정에  
준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.

제1장 총칙

제2장 국내여비

제3장 국외여비

제4장 보칙

부칙

<별표-2> 제22조 해당

### 강사비 지급기준 (교육용 자료의 원고 제작비용 포함)

항 목	적 용 기 준	금 액
주 강사 (각종 교육 및 행사)	1시간 당	20,000원
	1일(최대10시간)적용	200,000원
보조강사 (교육진행, 시험감독 등)	1시간 당	15,000원
	1일(최대10시간)적용	150,000원

\* 1인 1일 관외 교육 및 행사시 여비는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별도지급

\* 임원이 아닌 외부에서 초빙한 강사는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<별표-3> 제23조 적용

### 지도 위탁제작비 산출기준

1. 중앙연맹이 발주한 대회지도 제작: 지도제작은 경쟁 입찰 형식으로 발주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기존의 보유한 지도를 단순하게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는 경우
  - 가. 해당지도의 축척에 따라 기본적인 점검, 수정하는 경우로 조사비용 일체(교통비, 숙식비 등) 등을 감안하여 제작자(소유권자)와 합의하여 진행한다. 단, 수정작업의 경우 최대 1주일을 넘지 않도록 협조한다.
  - 나.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작업자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.  
이 때 보유권리자는 수정 가능한 지도원판의 원고를 제공한다.
  - 다. 이 경우 해당지역의 연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협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<별표-4> 제24조 해당

### 경조사비 지급기준

항 목	금 액	비고
본 연맹 임원의 직계가족 결혼	화환	본인, 자녀
임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	조화	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
본 연맹 임원의 기타 경조사	100,000원 상당	임원을 공식 초청한 행사
대의원의 경조사	화환, 조화	본인 및 직계가족 적용
기타 특별한 사항	회장 결정	

※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표자를 지정하여 출장을 지시한 경우 출장비 적용 지급